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5786 |
|----------|-------|

발의연월일 : 2018. 9. 28.

발의자 : 남인순 · 김현권 · 이원욱
김상희 · 이춘석 · 윤호중
이학영 · 기동민 · 윤일규
박홍근 · 신창현 · 임종성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대비 동기에 비하여 8.0%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8년의 기초급여액: 25만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 30만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